



: 2020-05-2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도11962 정치관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형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6노1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B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B사령부 소속 C 부대원들과 이 사건 정치관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균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치관여죄, 정당행위, 공동정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_____

 대법관 박상옥 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